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1993.	8.	25	훈령	제227호	
개정	1993.	10.	6	훈령	제228호	
개정	1994.	3.	5	훈령	제235호	
개정	1994.	9.	8	훈령	제246호	
개정	1995.	9.	23	훈령	제267호	
개정	1999.	8.	20	훈령	제364호	
개정	2000.	4.	19	훈령	제384호	
개정	2005.	3.	30	훈령	제464호	
개정	2008.	2.	15	훈령	제499호	
개정	2008.	6.	30	훈령	제504호	
전부개정	2011.	6.	27	훈령	제565호	
일부개정	2011.	9.	30	훈령	제572호	
일부개정	2012.	8.	7	훈령	제58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1.	16	훈령	제589호	
일부개정	2014.	9.	1	훈령	제616호	
일부개정	2014.	12.	24	훈령	제62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3.	2	훈령	제648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10.	24	훈령	제68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 제도화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양시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및 그 밖에 인사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9. 1>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구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시·구에 각각 두고, 시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구에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 16>

③ 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구 인사위원회위원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3. 인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시장(구청장)의 인사 관장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수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 1. 16>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대상자인 경우
2.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대상자인 경우

제5조(비밀유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시장(구청장)이 공식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6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바로 하위직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① 시장은 5급 이하 시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개정 2014. 9. 1>

1. 4급, 7급, 8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한다.
2. 5급, 6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류별로 작성한다.
3. 삭제 <2014. 9. 1>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은 8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14. 9. 1]

제8조(승진방법) ① 6급 이하의 승진은 현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경과자 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 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기간에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해당기간에 “가”평점을 받은 사람
2. 공사생활에 흠결(윤리관, 품의손상, 공익저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승진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부터 제11조의 2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급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동점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평정소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설치하며, 위원장은 실·국장급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국장급 또는 구

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제12조(평정위원회 운영) ① 평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정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주관한다.

1.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
2.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실적가점 기준 심의
3.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부여 심사·결정
4. 공무원 평정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심의

제14조(비밀유지) 평정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누구든지 평정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시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직관리

제15조(전보원칙) ①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해야 한다.

제16조(전문필수요원 관리) 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특수분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기술을 요하는 업무

2. 전산,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관련 계속사업 업무
3. 그 밖에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순환보직)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순환보직은 격무부서 근무자 중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전보한다. 이 경우 격무부서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업무부서를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자를 또 다른 격무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순환보직의 인사원칙은 가급적 공개한다.

제18조(보직경로) ① 5급 이하의 보직은 담당 직위의 범위와 책임도, 곤란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단계화하여 보직경로를 설정 운영하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자 및 타 기관에서 전입한 5급 공무원은 구청과장 또는 동장을 거쳐야 하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본청·사업소·구청의 무보직 또는 동의 팀장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직경로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하 “팀장임용 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9. 30>

1.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
2. 음주운전 사건 비위
3.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관련 비위
4.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팀장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9. 30>

⑤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팀장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6급 공무원과 6급 무보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팀장보직 임용은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신설 2011. 9. 30>

제19조(구간전보) ① 시장은 행정조직의 활력과 능률제고를 위하여 구간 인사 교류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사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결원보충) 6급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차하급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발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시본청 및 사업소, 구청의 결원은 별표 3의 전입순위자명부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할 경우 능력평가·소양고사 등을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2. 전입순위자명부에 의한 배수는 별표 4와 같다.
3. 타 기관 공무원 전입은 7급 이하로 하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연고지배치 또는 「경기도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시·군간의 인사교류 시에는 예외로 한다.
4. 타 기관 전입자는 동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전입순위자 명부

제21조(전입순위자명부 작성대상) 전입순위자명부는 구·동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당직급에서 구·동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작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9. 1>

1. 해당직급으로 구·동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2. 해당직급에서 견책이상의 징계처분 중인 사람
3. 강임 중인 사람
4. 최근 1년간 근무성적 “가”의 평점을 받은 사람

제22조(명부의 작성방법) ① 전입순위자명부는 110점을 총평정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 시정기여도

평정점 1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은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평정점 외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에 해당하는 가점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8.18점 내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에 적용한다. <개정 2011. 9. 30>

③ 시정기여도 평정은 별표 5에 따른다.

제23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4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5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직급에서 구·동의 근무경력이 장기근속인 사람
3. 시정기여도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제26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구·동 근무연수가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명부작성 제외대상에서 제한한 사유가 해제 또는 발생한 경우
3. 가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진·전보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5. 퇴직·사망 등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장 6급 팀장 임용순위자 명부 <신설 2011. 9. 30>

제27조(6급 팀장 임용순위자명부 작성대상) 6급 팀장 임용순위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일반직 6급 공무원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작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9. 1>

1.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팀장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사

람으로 하되, 다만 팀장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한다.

2. 팀장으로 재직 중 파견, 교육, 전문위원, 비서 등 제1호 규정 이외의 사유로 팀장 직위를 받지 못한 사람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4. 9. 1]

제28조(명부의 작성방법) ① 명부는 110점을 총평정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 시정기여도 평정점 1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평정점 외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점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8.18점 내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에 적용한다.

③ 시정기여도 평정점은 시장 5점, 부시장 5점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29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30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31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시정기여도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본조신설 2011. 9. 30]

제32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1.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2. 가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퇴직·사망 등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명부작성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제33조(6급 팀장 임용) ① 팀장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임용할 때에는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명부는 별표 3 서식을 준용한다.

③ 팀장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고 제2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기간이 만료되어 팀장으로 임용하여야 할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보다 우선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8장 임용기준 및 절차 <개정 2011. 9. 30>

제34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1. 9. 30]

제35조(임용제한) ①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 사유에 따른 인사는 최소화 하고 정례적인 인사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인사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자체운영계획은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1. 9. 30]

부칙 <2011. 6. 27 훈령 제565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제7조제2항은 201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9. 30 훈령 제572호>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훈령 제58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지 생략

부칙 <2013. 1. 16 훈령 제5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1 훈령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 제7조제1항,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24 훈령 제62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를 별지(붙임2)와 같이 한다.

붙임2 생략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6. 3. 2 훈령 제648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별표 <2016. 3. 2 훈령 제648호> 참조]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장급”을 “실·국장급”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별표 <2017. 6. 15 훈령 제670호>
참조]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24 훈령 제68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별표 <2018. 10. 24 훈령 제689
호> 참조]

[별표 1] <개정 2018. 10. 24>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자(제10조 관련)

구분 기관별	평 정 대 상		평 정 자	확 인 자
	직급	직 위		
시	5급	4급 직무대리 본청 담당관 본 청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보건소 4급 사업소 과장, 도서관장 5급 사업소장	인사담당국장 부 시 장 실·국장 사무국장 소 장 소·원장 업무지도실·국장	부 시 장 부 시 장 부 시 장 부 시 장 부 시 장 부 시 장 부 시 장
	6급	5급 직무대리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4급 사업소 5급 사업소	업무지도실·국·소 원장 담 당 관 과 장 전문위원 과 장 과장, 도서관장 사업소장	부 시 장 부 시 장 국 장 사무국장 소 장 소·원장 업무지도실·국장
	7급 이하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4급 사업소 5급 사업소	담 당 관 과 장 전문위원 과 장 과장, 도서관장 사업소장	부 시 장 국 장 사무국장 소 장 소·원장 업무지도실·국장
구	5급	과 장 동 장	구 청 장 구 청 장	부 시 장 부 시 장
	6급	5급 직무대리 구 청	행정지원과장 과 장	구 청 장 구 청 장
	7급 이하	구 청	과 장	구 청 장
동	6급	동 주민센터	동 장	구 청 장
	7급 이하	동 주민센터	동 장	구 청 장

[별표 2] <개정 2017. 6. 15>

보 직 경 로(제18조 관련)

직급별	단 계 별			비 고
	1단계보직	2단계보직	3단계보직	
지방5급 (직대포함)	구청과장 동 장	본청 담당관·과·단장 직속기관 과장 사업소 과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지방6급	동 팀장	구청팀장	본청 팀장 직속기관 팀장 사업소 팀장 의회사무국 팀장	본청은 보좌 보조 기관을 포함한다.
지방7급 이하	동주민센터	구 청	본청·직속기관 사업소·의회사무국	일반직 8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2 단계 보직을 생략 할 수 있다.

[별표 3]

전입순위자 명부

순 위						소 속	성 명	임 용 일			총 점	항 목 별 점 수				비 고
정 기	① 조 정	② 조 정	③ 조 정	④ 조 정	⑤ 조 정			최초	현직급	현부서		근무 성적	근무 경력	시 정 기여도	가 점	

[별표 4]

전입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전입선발임용범위

전입하고자 하는 결원수	전입순위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 ~ 5명	결원 1명당 4배수
6 ~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2배수 + 35명

[별표 5] <개정 2017. 6. 15>

시 정 기 여 도(제22조 관련)

□ 분포비율

대상별	분포비율				비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직급·직렬별 인원	20% (5점)	40% (4점)	30% (3점)	10% (1점)	· 직급·직렬별로 상대평가 · 대상공무원이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직군별로 통합

□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평정 대상	평정 구분	평정자	확인자	
구청 소속 직원	구청 (1차)	각과 주무팀장	행정지원과장	· 업무의 곤란성 및 충실도,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분포 비율에 부합되게 상대평가
	시본청 (2차)	실·국 주무과 주무팀장	총무과장	
동 소속 직원	동 (1차)	팀장	동장	· 2차평정은 국 주무과(구청은 각과) 주무팀장이 합의운영
	구청 (2차)	각과 주무팀장	행정지원과장	

□ 시정기여도 배점기준

계	시정기여도	
	구(동) 자체평가	시 본청(구청) 평가
10점	5점	5점